성주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하는 대상 외의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)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(안 제1조)

○ 지원대상, 방법, 금액,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3조～제6조)

○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」,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모자보건법」

○ 예산조치 : 72,600천원 (군비 100%)

- 산출내역 : 907,500원 X 80명 = 72,600천원

○ 규제심사 : 대상 아님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 : 2019. 3. 7. ~3. 27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모자보건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등에 근거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의 대상자에게 동일한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조례로서,

○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검토 및 협의가 완료 되었으며, 우리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,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며 우리군 최우선 과제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